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6-9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타	한국전자통신연구원

2. 조치내용

□ 과징금 40만원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

○ ㈜진시스템의 주주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은 '21.5.26. 동사 주식을 신규상장하였고, 같은 날 일부지분을 장내매도함에 따라 대량보유(신규)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, 이를 보고기한이 지난 '23.4.5.에 기재누락 및 지연보고

나. 근거법규
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47조 제1항, 제429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